



제 2019-140호

중국

광저우 인터넷 법원, 창립 1주년 기념해 10대 사례 발표, 그중 4건이 저작권 분쟁

북경사무소

■ 현황

- 지난 9월 28일 광저우 인터넷법원(广州互联网法院)은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광저우 인터넷법원 백서(广州互联网法院白皮书)’를 발표함
- 백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총 37,688건의 사건을 수리했으며, 그중 27,956건을 심리하여 종결함. 이는 지난 1년 동안 25명으로 구성된 광저우 인터넷법원 소속 법관 한 명당 약 1,118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임
- 수리한 사건 중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사건’과 ‘온라인 금융사건’이 전체 수리한 사건 중 각 56.87%와 39.85%를 차지했는데, 광저우 인터넷법원 또한 항저우, 베이징 인터넷법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 저작권 분쟁을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백서는 또 지난 1년간 광저우 인터넷법원이 처리한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10개 사례를 선정해 공표했는데, 그중 4개 사례가 저작권 분쟁임
 - 아래에서는 동 백서에 소개된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사건 개요와 법원 판결을 살펴봄



■ 주요 내용

- 사례 1: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사례
 - 원고 상하이페이후과기회사(上海菲狐网络科技有限公司)는 게임 쿤룬쉬(昆仑墟)의 저작권자인데, 동 회사는 광저우보지온라인과기회사(广州柏际网络科技有限公司) 등 세 피고가 공동 운영하는 링젠창츄(灵剑苍穹) 등 5개 게임상의 캐릭터 기능, 배경화면, UI 인터페이스, 도구 등 여러 방면에서 쿤룬쉬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표절을 이유로 “법원에 세 피고인이 원고 게임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침해행위의 중지 및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19년 3월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1심 판결에서, “피소된 피고들의 5개 게임이 원고 게임 쿤룬쉬와 ‘전체 관감(整体观感)’상 실질적 유사성이 있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는 쿤룬쉬 게임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더한 독창성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게임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며, 또한 피고 게임들은 이러한 원고 게임을 개편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하지만 법원은 “피소된 링젠창츄 등 5개 게임은 쿤룬쉬 게임의 복제품이 아니므로 복제권에 대한 침해는 없으며, 또한 전송권에 대한 침해도 없다. 두 게임이 ‘전체 관감’상 실질적 유사성이 있지만, 원고 저작물의 기타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동 법원은 판단하지 않으며, 원고는 재차 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주장할 수는 있다. 따라서 원고 페이후회사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함
 - 즉, 동 사건에서 법원은 쿤룬쉬와 링젠창츄 등 5개 게임의 비교대조를 통해 두 게임이 전반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했지만, 당사자인 원고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개편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음



○ 사례 2: 저작권 양도 이중계약서 사례

- 모 인터넷 문학 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4편의 작품에 대한 전송권 등 관련 권리를 모 법률컨설팅회사에 양도했으며, 해당 컨설팅회사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소송제기 등의 권한도 위임함. 이후 컨설팅회사는 재차 상술한 권리를 모 문화전파회사(文化传播公司, 이하 ‘문화회사’)에게 양도함
- 문화회사는 모 워챗 공중계정이 허락 없이 문제의 저작물을 전제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워챗 계정을 운영하는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문화회사가 실제 저작권 양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 문화회사는 법원에 소송 취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소송 제기를 기각함
-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조사를 통하여 동 사건에서 인터넷 문학의 작가와 모 법률 컨설팅회사 간에 이중계약서(阴阳合同)가 체결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저작물의 전송권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즉, 작가와 법률컨설팅 회사 간의 양도계약은 단지 권리 보호 목적만을 위해 체결됐으며, 실제로 저작권 양도가 이뤄진 것은 아님
- 현재 중국의 저작권침해 사건 중 일부 상업적 권리 보호 회사(변호사 사무소, 법률 컨설팅 업체 등)가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저작물의 전송권을 허위로 양도받고,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중국법원은 이러한 상업적 권리 보호 회사가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고 있음. 이번 사건에서 중국법원은 이중계약서를 통하여 진정한 권리 귀속 관계를 은폐하고 나아가 사법수단을 이용하여 이익을 획득하려는 태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을 보여줌. 비록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소 취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송행위와 소 취하 목적을 엄격하게 조사해서, 사법 자원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법질서 유지를 꾀하고 있음



○ 사례 3: 음악저작물 침해사례

- 작곡가 왕(王) 모 씨는 모 변경검문소(边检站)가 허락 없이 자신이 창작한 노래를 이용했으며, 또한 이를 온라인을 통하여 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함. 하지만 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피고 변방검문소는 자신들은 국가기관이며, 변방검문소의 이미지를 외부에 선전하고 업무상 필요 때문에 문제의 음악작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의 이용은 공정이용(중국어명 ‘합리사용(合理使用)’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2019년 8월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피고들은 선전목적으로 타인이 이미 공표한 음악작품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왕 모 씨가 작곡한 노래를 이용하여 선전 영상을 만든 행위는 피고들의 법정 직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공무집행에 속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들은 허락 없이 원고의 음악저작물 전체를 사용했지만,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공정이용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 변방검문소는 8만 위안(한화 약 1천 3백만 원)을 배상하고, 원고 음악작품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의 사용을 중지하며, 배상한 이후 기존 음악 동영상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 후 원래의 선전목적으로 해당 음악 동영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함

○ 사례 4: 게임 영상에 대한 침해금지가 처분 신청 사례

- 온라인 게임 왕자영요(王者荣耀)의 저작권자인 텐센트는 “국내 모 쇼트클립 플랫폼이 허락 없이 왕자영요 게임 쇼트클립 영상을 대량으로 온라인상 유포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게임 영상 업로드를 종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쳐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침해금지가처분신청(중국어명 ‘소중금령(诉中禁令)’을 함



-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신청인의 보전신청이 법률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함과 동시에, 쇼트클립 플랫폼으로 하여금 문제 동영상의 업로드를 즉시 중지하고, 왕자영요 게임화면이 포함된 모든 동영상의 유포를 금지하며, 연속해서 15일 이상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고하라”라고 요구함. 즉 법원은 “만약 적시에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권리침해로 인한 손실을 향후 보전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 중 침해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함

■ 평가

- 중국에서 인터넷 법원은 현재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인터넷법원은 인터넷상 발생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현재 이들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중 대다수가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것임. 또한, 인터넷법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소송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인터넷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의 양은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추후 상하이 등 다른 지역에도 인터넷법원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 권리자 또한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법원을 통하여 기존 소송보다 손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이 인터넷 법원 활용방안에 관해서 연구 및 조사하여 우리 권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우리 권리자들도 이러한 인터넷법원을 이용하여 중국 내에서 자신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출처

- 신화망(新华网)
 - <https://mp.weixin.qq.com/s/-QRGdF7kbQC7R91fGfmNgg>
- 지식재산권사건(知识产权那点事)
 - <https://mp.weixin.qq.com/s/-QRGdF7kbQC7R91fGfmNgg>